



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!

Q 합성고무재질의 크로스(crocs)신발이 안전품질표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.

A 크로스 신발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유아용 섬유제품(만 36개월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)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안전·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인 가정용섬유제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또한 동 공산품의 안전요건 분류는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아동용 섬유제품(36개월 초과 만12세 이하)과 의류류(만 12세 이상 성인용) 제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Q 습기제거제의 경우 KC마크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?

A 습기제거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동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5(습기제거제) 1. 적용범위에 의하면 일반 가정의 벽장,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습을 위한 흡습제의 성분에 염화칼슘, 산화칼슘, 염화마그네슘 및 실리카겔을 사용한 가정용습기제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시험항목 등에 대한 검사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위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안전품질 표시기준 부속서5(습기제거제)의 표시에 따라 표시한 후 KC마크를 사용하면 됩니다.

Q 여행용(캠핑용)으로 수입하는 가구 일체(테이블, 의자 등)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가구(부속서10)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? 또 이미 수입한 물건에 대해 물품 최종 박스 표면에 스티커로 부착 표시 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?

A 가구 및 텐트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해당되어 KC마크를 포함한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합니다.

- 다만, 가구의 경우 일반 가정, 학교,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책상, 의자, 싱크대 등이 해당 되며 여행 전용(캠핑용 등)으로 제작되는 테이블, 의자 등은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현재 안전품질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나, 제품에 직접 표시를 하기 힘든 경우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최소단위 포장에 안전품질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 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,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